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단1520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신용태, 임동찬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선정자 C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선정자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3. 25. 접수 제25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선정자 C는 원고에게 77,649,315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값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차용증 작성과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

- 1) 선정자 C와 F는 본인들을 차용인(채무자)로 하여 2017. 6. 1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2) 선정자 C는 2017. 6. 12.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경기 G 답 1139㎡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의 11개 호실(이하 위 토지와 11개 호실을 합하여 ‘G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F와 선정자 C’,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3) 선정자 C는 같은 날 선순위로 G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F와 선정자 C로 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의, I, J에게 각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K에게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L에게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등기를 합하여 ‘선순위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임의경매와 배당결과

- 1) K가 자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기초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경23984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0. 27.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2) 위 경매절차에서 2019. 3. 12. G부동산이 주식회사 M에 582,9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매각대금 등을 배당한 결과 같은 해 4. 10. 선순위근저당권등기권자들이 1순위로 각 63.51%의 배당비율로 배당금을 받고, 원고는 후순위로 전혀 배당액을 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다. 선정자 C의 재산처분과 당시의 재산상태

-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 선정자 D과 E은 선정자 C의 아들들이다.
- 2) 선정자 C는 남양주시 N 임야 10711㎡ 중 1/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이었는데, 2019. 3. 25. 피고와 선정자 D, E(이하 피고 형제들을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지분 중 각 1/3지분, 즉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3. 1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3)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정자 C는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 C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 C는 이 사건 차용증의 손글씨 부분이 없는 백지상태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반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과 대여여부

1) 진정성립

선정자 C는 본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의 일부가 미완성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을 제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은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대여여부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F가 선정자 C로부터 G부동산 중 토지부분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내부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만을 위해 형식상으로만 선정자 C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는 2017. 6. 12. 선정자 C와 F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날 선정자 C의 통장으로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정자 C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5,0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7. 6. 13.부터 2019. 10.

- 1.까지의 이자 27,649,315원을 합한 77,649,316원 및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는 선정자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선정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 등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그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선정자 C의 앞서 본 재산상태, G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이 선순위근저당등기권자들의 채권액에도 미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난 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점, 선정자 C와 피고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등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취소와 원상회복

선정자 C와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등은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

선 정 자 명 단

1. B

2. D

3. E

4. C

끝.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일차 10711㎡에 관한,

1. ()의 공유지분 36분의 1 전부
2. ()의 공유지분 36분의 1 전부
3. ()의 공유지분 36분의 1 전부, 끝.

